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4

제출년월일 : 2005. 4. 2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문구 및 내용 삭제(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05. 4. 1 ~ 4. 21 ▷ 의견제출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계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생활계 폐기물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중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를 "일반용봉투"로 한다.

제15조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래기 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6.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 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와 ---------- ----------.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 ---------- ----------.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②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 ----------. ②---------- 일반용봉투 ---------- ----------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④**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 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일반용봉투** ---------- ----------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 ----------**일반용봉투의** ---------- ---------- ---------.